

수신자 수신자참조
(경유)

제 목 ‘타 학과(부) 과목 인정’ 제도 적용 범위 안내(국내외 교환학생 학점전환 관련)

‘타 학과(부) 과목 인정’ 제도와 관련하여, 인정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1. 관련 규정: 학칙시행세칙 제20조

제20조(타 학과 과목 이수인정) ① 동일 단과대학 내 타 학과(부)에서 개설한 전공필수·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② 소속 학과(부)장이 타 단과대학 학과(부)의 전공필수·선택 교과목 중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소속학과(부)에서 개설한 전공의 최소 이수학점은 별표6에 의한다.
 ④ 소속 학과(부)장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과(부) 전공 최소이수학점을 축소하거나 불인정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.
 ⑤ 다전공 이수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부전공 이수자의 주전공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.

2. 인정 적용 범위

가. 본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

나. 국내·외 타 대학(학점교류, 교환학생 등) 교과목 이수 시 인정 불가

- 1) 타 학과(부) 과목 전공선택 인정 불가 (학칙시행세칙 제20조 적용 불가)
 학과(부)에서 이수구분 변경 시 전공교과목 중 성적이 ‘P/F’로 처리된 경우
 해외교환학생으로 인해 수학한 교과목이므로 ‘타 학과(부) 전공선택 인정’
 미인정 처리하여야 함 (국내학점교류의 경우 과목ID가 불일치 함)

2) 관련부서, 학과(부) 안내 오류 및 학생 수강오류로 인한 예외처리 요청 인정 불가

3) 인정불가 예시

【해외교환학생】

기독교학과 학생이 ABC대학으로 해외교환학생을 다녀옴. 학생은 귀국하여 ABC대학에서 수학한 ‘□□교과목’을 국어국문학과 ‘○○교과목’으로 인정받음. 기독교학과는 ‘○○교과목’을 타 학과 전공선택 인정으로 기독교학과 전공으로 인정하고 있음. 그러나, 본교에서 개설하고 이수한 교과목이 아니므로 ‘□□교과목’을 ‘○○교과목’으로 전공선택 인정받을 수 없음.

→ 해당 ‘○○교과목’은 전공선택이 아닌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음.

【국내대학교류학생】

기독교학과 학생이 국내대학 교류를 통해 ○○대학에서 ‘■■■교과목’을 수강함. 본교에 동일교과목이 국어국문학과에 개설되어 있으며, 기독교학과는 타 학과 전공선택으로 해당 교과목을 인정하고 있음. 그러나 해당 ‘■■■교과목’은 본교에서 개설하고 이수한 교과목이 아니며, 교과목 이수 시 과목ID도 ‘국내대학 학점교류’로 생성되어 국어국문학과 ‘■■■교과목’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독교학과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.

→ 해당 ‘■■■교과목’은 전공선택이 아닌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음.

교 무 처 장

수신자 국제처장, 인문대학장, 자연과학대학장, 법과대학장, 사회과학대학장, 경제통상대학장, 경영대학장, 공과대학장, IT대학장, 베어드학부대학장, 스포츠학부장, 예술창작학부장

협조자

시행 학사팀-549 (2017.03.27.)

접수 경영대학 교학팀-318 (2017.03.28.)

우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/ www.ssu.ac.kr

전화 02-828-7401 전송 0303-0334-0114 / hana2514@ssu.ac.kr / 공개